



# 전기사업법 특별세미나

## 전기사업법 개정취지 및 운영방향

대한전기기사협회 홍보과

전기기사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고,  
전기기사의 심부름꾼으로서  
협회 위상정립을 통해  
산업계의 선두주자로 그 역할을 강조...  
새로운 제도에 의한 새질서가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자

지난 3월 5일 한국종합전시장 국제 회의실에서 500여명의 전기기사와 金世鍾 동력자원부 전력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사업법 특별세미나가 당 협회 金聖模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權龍得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기기사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에 역점을 두고, 전기기사의 심부름꾼으로서 협회 위상정립을 통해 산업계의 선두주자로 그 역할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전기기사들께 우리 전기인의 마음 가짐과 자세를 새롭게 하고 서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친밀감을 시작한 전기기사협회와 동참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행사는 전기사업법이 17년만에 개정된 탓으로 전기기사들의 많은 관심과 공규중 속에 진행되었고 전기사업법 개정의 주역을 맡은 金世鍾 동력자원부 전력국장이 연사로 초청되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 및 운영 방향”이라는 연세로 강연에 나선 金世鍾 전력국장은 전력수급정책차원에서 일본의 전기사업법의 유형을 말피하고 오늘의 우리 현실에 맞게 알기 쉽고 간편한 전기사업법의 개정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지만 사실상 전기기술자의 지위 향상에도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하고 새로운 제도에 의한 새 질서가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金世鍾 전력국장의 강연 내용중 전기사업법 개정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 전기사업법 용어를 용이하게 기술하였다(전기 공작물→전기설비).
- 동자부장관이 장기전력수립계획을 수립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장기전력수급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임정규모 이상의 자가용진기설비도 3년간의 시설 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동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설치시에는 사업허가 사항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전기사업허가와 전기설비설치허가를 분리하여 전기설비 설치허가규



▲ 강연을 하는 김세종 동력자원부 장관

정을 별도로 신설하였으며, 허가의 대상은 수력발전 설비, 출력 1만kW 이상 발전설비와 전압 20만V 이상의 송변전 설비로 한다.

- 중앙 행정기관의 권한을 각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행정의 현지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공사를 설립하였고, 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업무 확인을 전기기사협회에 위임하였다.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겸임 제도와 전기안전관리대행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관리 체계도 확립하였다.

- 전기안전관리의 대행규모는 용량 1천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100kW 미만의 발전설비로 한다.

- 자가용 발전시설에서 생기는 잉여전력은 일반 전기사업자 이외에 공급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일병합발전등을 통한 동일 건물 또는 집단에서 공동으로 공급해서 남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반전기사업자만의 공급규정 준수사항을 이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도 공급 규정을 준

수도록 한다.

이날 참석자의 대부분은 전기안전관리사를 희망하는 전기기사들로 전기안전관리업무부분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문과 답변에 나선 金基旭 기술부장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문=현재 안전관리자(구 보안담당자)를 겸임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은. 또, 겸임하고 있는 사업장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증설, 일부 폐지 등).

답=종전법에 의해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자격유효기간은 시행령에서는 90년 12월 31일까지로 시행규칙에서는 93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규정,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 문제를 농자부에 질의 차후 참석자들에게 통보도록 하겠다. 증설 또는 소속 자가용 수용가의 행정구역 변경시는 즉시 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

문=안전관리사 자격기준 미달시 유예사항은.

답=유예대상은 상주자에 한하여 93년 12월 31일까지 경력을 보완하면 된다.

문=1천kW 이상의 수전설비업체인 경우 적당한 선임사가 없을 경우에는.

답=1kW 이상은 상주자를 선임해야 하며, 자격자



▲ 인사말을 하고 있는 權龍得 회장

가 2만5천명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된다.

문=방화관리자, 산업안전관리자로 기선입된 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답=원칙적으로 겸임할 수 없으나 한 사업장인 경우에 수용가 편의를 위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문=안전관리자의 경력산정방법은.

답=법에 「자격을 가진자」로 돼 있어 전기기사자격취득전의 경력도 해당분야에 종사했을 경우 인정된다.

문=자격증을 취득한 후 타사업에 종사했을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답=인정되지 않는다.

문=재직중인 회사의 시설용량은 7백kW인데 현재 겸임 업무를 3개소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직장을 옮

긴 후에도 겸임이 가능할지, 아울러 현재 행정구역이 다른 곳에 겸임하고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답=겸임 제도는 삭제되고 대신 개인등록제가 신설됐다. 겸임은 향후 할 수 없으며 안전관리업무는 15개 행정구역중 한지역에만 가능하다. 다만, 기선입된 겸임대행자에게 기득권 차원에서 겸임의 개소 수나 시설, 행정구역 등의 변경이 없을 경우 자격이 유효한지는 동자부의 법 운용의 탄력성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문=안전관리자의 채용시 기존의 직원은 많은데 자격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답=안전관리규정의 자체검사 항목과 정기 검사시의 검사범위는 동자부가 마련한 전기안전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참고하기 바람직 수전 설비 이외의 전기설비는 모두 자체검사 대상이다.

문=주택 또는 빌딩의 관리업체 종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답=주택관리령에 의한 용역회사가 빌딩을 관리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전기설비 설치자, 즉 오토축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㉔

### 〈바로잡습니다〉

창간호 내용중 바로잡습니다.

● 92면 정관 제4조

9.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해임 신고에 관한 업무지원

● 105면

정기총회 남동지부 참석인원 565명은 65명 천안분회장 이희평 신임을 유임으로 수정합니다.